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6월 2일, 김위상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6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11.1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
론 · 소위원회부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2.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전체회의(2026.2.6.)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
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위상의원)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1억원 이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최대 1년 2개월 ~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범죄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 사이 처벌에 차이가 없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일수록 사업자가 처벌을 택하고 체불임금 변제 의무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으며, 실제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차등·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석현)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체불 총액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100억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변제 의무가 면탈되지 않도록 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궁극적으로 처벌 강화를 통한 임금체불 사건의 방지와 체불 피해근로자 보호의 실효성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금 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경우 등 개정안이 가중처벌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처벌대상 행위와 행위주체에 대한 의미 구체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